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225
------	------

2023.09.1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3.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정책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세계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적극적 도시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음.

- 미국의 최대도시이자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친선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미국내 서울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2016년 7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며 따라 양 도시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친선도시 협정 체결안을 마련하였으며,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협약도시 : 미국 뉴욕시 및 뉴질랜드 웰링턴시

2. 협약 주요내용

- 뉴 욕 시 : 경제, 사회, 문화, 도시개발, 환경(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및 정보교류 등 양 도시간 국제 교류 및 친선 관계 확대
- 웰링턴시 : 환경, 문화, 예술 및 국제 교육, 인적 교류, 영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 확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뉴욕시, 뉴질랜드 웰링턴시와의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국제교류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됨.

나. 친선·우호도시 결연 현황

- 서울시는 현재 국외도시와의 교류에 있어 친선도시와 우호도시로 구분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여기서 친선도시는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유사성 가진 도시를 말하고, 우호도시는 친선결연 전 단계로 향후 교류추진이 필요한 도시를 말하는 등 각각 구분하여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음.
- 이와 같은 국외도시와의 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하면서(제13조제2항제7호)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제47조제1항제10호), 서울시는 그동안 같은 법에 따라 친선·우호도시와의 협약을 체결해왔으나 국제교류조례를 제정(2014.4.)하면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함.

- 이러한 국제교류조례는 친선결연을 체결할 경우의 검토사항으로 다음의 조건을 명시하면서(제6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함(제7조).

1. 수도 또는 수도에 준하는 도시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의 유사성
2.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
3. 산업, 도시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 가능성 등

- 한편 서울시는 23개 도시와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후 친선도시가 추가되지 않았으며, 우호도시는 아일랜드 더블린(2023.3.16.) 등 52개 도시와 협약을 체결한 상태임.

다. 동의안의 타당성

- 미국 뉴욕시는 금년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시장 방문(2023.9.17.~21.예정)을 계기로 친선도시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뉴질랜드 웰링턴시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2016.7.18.) 이후 지속적으로 친선도시 협약 체결을 요청해 왔음.
- 뉴욕시는 UN본부,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가 소재하여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인식되는 대도시로 그동안 서울시와의 교류 협약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K-컬처의 유행 등 서울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2021년 뉴욕시장 교체 이후 서울시와의 교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9월에 예정된 서울시장의 뉴욕 방문을 통해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특히 뉴욕시의 경우 친선도시 외에 별도로 우호도시 규정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하며, 뉴욕시장의 임기(2025.12.31.)까지를 효력기한¹⁾으로 할 예정임.
- 한편 뉴질랜드의 수도인 웰링턴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로, 우호도시 협약 체결 이후 17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인 교류를 이어오면서 서울시와 환경, 문화, 예술 및 국제 교육, 인적교류, 영상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또한, 웰링턴시 내부규정상 우호도시보다 친선도시로 협약을 맺을 경우 예산 규모가 많으므로 친선도시 승격을 통해 서울시와의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따라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웰링턴 시의회 대표단²⁾의 서울시 방문(2023.9.23.예정) 시에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이와 같이 뉴욕시와 웰링턴시의 대내외적인 위상과 경제, 사회, 문화적

1) 협약서 상의 효력기한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협약 상대도시의 요청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협약서에 명시하기도 함.

2) 웰링턴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수반과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내각제로 운영됨.

교류의 높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친선도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 간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당사국의 현행 법률이 준수되므로 뉴욕시와의 협약서 중 ‘뉴욕시 행정법 section 23-1202항³⁾을 준수한다’는 문구는 불필요하며,

제 1 조

양 도시는 자국의 법 규정과 상호 평등 및 이익의 원칙에 따라 평등, 상호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호 교류를 증진하며, 경제, 사회, 문화, 도시개발, 환경(특히 기후변화), 직업, 기술, 청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 아이디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양 도시와 각 국가 간의 국제 교류 및 친선, 이해, 국제 비즈니스 관계 확대를 촉진하고 양 도시 간의 자선활동, 과학, 기술, 무역 및 상업, 문학 및 교육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뉴욕시는 해당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공유에 대해 뉴욕시 행정법 section 23-1202항을 준수한다.

웰링턴시와의 협약서의 경우 협약서의 내용에 웰링턴 시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을 표기한 부분이나 웰링턴시가 세계스마트지속가능도시 기구(WeGo)의 집행위원회 회원도시임을 명기한 부분은 실질적인 친선 결연 내용과 무관하므로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뉴질랜드 웰링턴시 간 친선도시결연 협약서

2023년 9월 웰링턴 시의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토리 화나우 웰링턴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웰링턴 시의회와 서울시는 오랜 기간 이어온 우호적인 도시 간 관계를 바탕으로

3) ‘23-1202 Collection, retention and disclosure of identifying information’(식별정보의 수집, 보유 및 공개에 관한 규정)

친선도시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다.

제 3 조

양 도시는 경제, 문화, 교육, 도시개발 등 다음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 합의한다.

- 세계스마트지속가능도시기구(WeGO)의 집행위원회 회원도시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임기 동안 스마트시티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 재생 문제
- 원주민 및 문화 단체와의 관계
- 지역사회 예술 및 문화 부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 국제 교육
- 인적 교류 및 다자 교류
- 영상 산업 파트너십

- 한편 그동안 서울시는 친선도시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지만 우호도시 협약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함으로써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하여는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자치법」⁴⁾ 제47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4)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생략)

서울특별시와 국외도시 간 친선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안 번호	1225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세계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여 적극적 도시외교를 추진해오고 있음
- 나. 미국의 최대도시이자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시와 친선결연 체결을 통하여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상호 지역발전 및 미국내 서울시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2016년 7월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친선도시 협정 체결을 위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며 따라 양 도시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친선도시 협정 체결안을 마련하였으며,
- 라.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약도시 : 미국 뉴욕시 및 뉴질랜드 웰링턴시
- 나. 협약 주요내용

- 뉴욕시 : 경제, 사회, 문화, 도시개발, 환경(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및 정보교류 등 양 도시간 국제 교류 및 친선 관계 확대
- 웰링턴시 : 환경, 문화, 예술 및 국제 교육, 인적 교류, 영상산업 등 다양한 분야 상호협력 확대

3. 참고사항

가. 웰링턴시와 주요 교류 현황

일자	교류형태	장소(대표자)	주요내용
'16. 7.	협약체결	서울시 (웰링턴 시장)	우호결연 체결
'17. 9.	문화교류	웰링턴	K-Culture 축제 서울시 홍보부스 운영
'17. 11.	예방 및 정책교류	서울시 (웰링턴 시장)	시장 면담 및 정책 현장 시찰
'18. 7.	문화교류	웰링턴 (국제협력관)	K-Culture 축제 서울시 홍보부스 운영 및 서울시 공연단 파견
'18. 7.	예방	서울시 (웰링턴 부시장)	국제협력관 면담 및 간담회 추진
'18. 8.	예방	서울시 (웰링턴 부시장)	행정1부시장 면담
'18. 9.	문화교류	서울시 (웰링턴 공연단)	2018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공연단 파견
'19. 3.	점등행사	웰링턴	3.1절 100주년 기념(마이클파올러센터 점등)
'19. 4.	점등행사	서울시	뉴질랜드 모스크사원 총격테러(4.15) 추모(신청사, 남산N-타워 점등)
'19. 5.	실무협의	웰링턴 (국제교류담당관)	웰링턴시 국제교류과장 면담 및 서울시 공연단 파견 관련 협의
'19. 7.	문화교류	웰링턴 (서울시 공연단)	K-Culture 축제 서울시 공연단 파견
'19. 10.	서한	-	웰링턴 시장(Andy Foster) 당선 축하서한 발송(서울시→웰링턴시)
'19. 12.	예방 및 정책교류	서울시 (웰링턴 시장)	시장 면담 및 정책 현장 시찰
'20. 1.	예방	서울시 (주한뉴질랜드대사)	국제관계대사 면담
'20. 3.	서한	-	코로나19 관련 위로 서한 접수(웰링턴시→서울시)
'22. 8.	정책교류	서울시 (웰링턴시 팀장)	서울시 스마트정책 교류
'23. 6.	문화교류	서울시 (웰링턴 공연단)	2023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공연단 파견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이지영 (☎ 2133-5272)

□ 서울-뉴욕시 협정서(안) : 국문본(영문 번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미합중국 뉴욕시 간
친선도시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미합중국 뉴욕시(이하 “양 도시”라 한다)는 양 도시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를 희망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양 도시는 자국의 법 규정과 상호 평등 및 이익의 원칙에 따라 평등, 상호 호혜의 원칙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호 교류를 증진하며, 경제, 사회, 문화, 도시개발, 환경(특히 기후변화), 직업, 기술, 청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교류, 아이디어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양 도시와 각 국가 간의 국제 교류 및 친선, 이해, 국제 비즈니스 관계 확대를 촉진하고 양 도시 간의 자선활동, 과학, 기술, 무역 및 상업, 문학 및 교육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뉴욕시는 해당 법률에 정의된 바와 같이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공유에 대해 뉴욕시 행정법 section 23-1202항을 준수한다.

제 2 조

양 도시는 도시 간 실질적 교류 협력 강화 및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공무원 간 기관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 3 조

양 도시는 서울특별시 국제교류과와 뉴욕시 국제관계 팀이 연락 부서 역할을 하기로 합의한다. 양 도시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상기 언급된 분야의 협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한다.

제 4 조

본 양해각서는 각 도시의 타 도시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대 도시에 특수한 법적 지위나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본 친선결연 양해각서는 영어, 한국어로 작성된 언어별 2부의 정본으로 이루어지고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본 양해각서는 2023년 9월 18일 뉴욕시에서 서명되고 서명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ERIC ADAMS
MAYOR
CITY OF NEW YORK

OH SE-HOON
MAYOR
CITY OF SEOUL

□ 서울-웰링턴시 협정서(안) : 국문본(영문 번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뉴질랜드 웰링턴시 간 친선도시결연 협약서

2023년 9월 웰링턴 시의회 대표단의 서울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토리화나우 웰링턴 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기간 동안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웰링턴 시의회와 서울시는 오랜 기간 이어온 우호적인 도시 간 관계를 바탕으로 친선도시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양 도시는 각 지방 자치 단체 및 국가의 법률에 기반하여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두 도시는 문화적, 역사적 유대를 실현하고 강화하며, 국제 교육 기회를 늘리고, 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발전시키며, 새롭게 부상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공유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

제3조

양 도시는 경제, 문화, 교육, 도시개발 등 다음 분야의 협력과 교류에 합의한다.

- 세계스마트지속가능도시기구(WeGO)의 집행위원회 회원도시로써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임기 동안 스마트시티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 재생 문제
- 원주민 및 문화 단체와의 관계
- 지역사회 예술 및 문화 부문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 국제 교육
- 인적 교류 및 다자 교류
- 영상 산업 파트너십

제4조

양 도시는 웰링턴 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 부서가 양 도시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관계는 친선도시 결연 관계의 지위에서 지원을 받는다.

제5조

본 협약서는 양 도시의 다른 도시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느 당사자에게도 특별하거나 우대적인 법적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본 협약은 한국어와 영어, 양 언어로 두 부씩 작성되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은 2023년 9월 23일 체결되며 서명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TORY WHANAU
MAYOR OF WELLINGTON
NEW ZEALAND

OH SE-HOON
MAYOR OF SEOUL
REPUBLIC OF KOREA